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42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황 희·박용갑·정성호

김병주 · 허 영 · 한민수

김준형 • 박균택 • 김영호

박수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나 사적 여행으로 KTX나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%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, 장애인·노인·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5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바 있음.

2015년 국정감사에서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, 군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할 때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동 제도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

여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 3 신설).

법률 제 호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3(수송시설 이용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철도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1조의3(수송시설 이용 지원)
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
	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
	단체, 「철도사업법」 제2조제8
	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「도
	시철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
	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
	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
	하게 할 수 있다.